

## 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### 1.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#### 가. 개정 이유

- 「관세법」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중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와 관련이 없는 인조대리석 제조용의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율을 0%로 규정하여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나. 개정 내용

- 인조대리석 제조용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0%로 조정
- 0%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신청 및 세관의 사후관리 대상임을 명시

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#### 라. 입법효과

- 덤핑방지관세 부과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조정해 소비자 후생 증대 등

#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